

1. 개정이유

2025. 12. 21.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 수수료 부과 근거가 어선법 제39조제1항제1의3호에 마련되어, 등록 신청서에 수수료 부과를 표시하고,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표시하기 위함 등을 기재

2. 주요내용

- 가. 신설되는 어선건조개조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과 부과될 수 있음을 표기
- 나.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등의 수수료에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과 변경 등록 시 수수료 10만원을 표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해당 없음

해양수산부령 제 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제1호의 가목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18. 5. 1.>**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어선건조·개조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업체명(법인명)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만 작성)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만 작성)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 대상	건조업	개조업	
선체 재료	강화플라스틱(FRP)재[], 강재[], 알루미늄합금재[], 목재[]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항			
변경사유			

「어선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4호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하려는 경우 가. 「어선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인력 명세서 나. 「어선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5호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단, 조선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은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대상에서 제외) 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조·개조규정 등 2.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가.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 나.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1. 사업자 등록증명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_____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벌칙 규정

- 가.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개조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어선건조·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개조업을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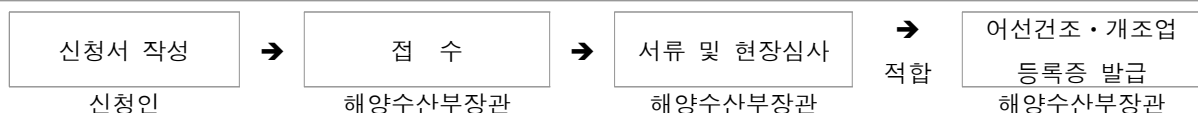
2.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단, 아래 가목과 마목의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
 나. 「어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 「어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개조업을 한 경우
 라. 「어선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
 마.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등록 결격사유

- 「어선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등의 수수료 (제73조의2 관련) 1.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수수료 (단위: 원)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등의 수수료 (제73조의2 관련) 1.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수수료 (단위: 원)		
구분	수수료		구분	수수료	
	건조허가	개조허가		건조허가	개조허가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000	1,000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000	1,000
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섭어업에 사용할 어선	2,000	1,000	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섭어업에 사용할 어선	2,000	1,000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1,000	1,000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1,000	1,000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 시험·조사 또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 시험·조사 또		

는 지도·감독에 사 용할 어선		
비고		
1.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 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 한다.		
2.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 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 한다.		
2. 어선용품 등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 승인 수수료		
(단위: 원)		
구분	수수료	
형식승인 또는 변경 승인	3,000	
3. 지정사업장의 지정 수수료		
(단위: 원)		
구분	수수료	
가. 지정건조사업장 의 지정	100,000	
나. 지정제조사업장 의 지정	100,000	
다. 지정정비사업장 의 지정	100,000	
비고		
지정사업장의 지정은 「어선법 시 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지정대상		

는 지도·감독에 사 용할 어선		
비고		
1.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 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 한다.		
2.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 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 한다.		
2. 어선용품 등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 승인 수수료		
(단위: 원)		
구분	수수료	
형식승인 또는 변경 승인	3,000	
3. 지정사업장의 지정 수수료		
(단위: 원)		
구분	수수료	
가. 지정건조사업장 의 지정	100,000	
나. 지정제조사업장 의 지정	100,000	
다. 지정정비사업장 의 지정	100,000	
비고		
지정사업장의 지정은 「어선법 시 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지정대상		

물건별로 지정하며, 물건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의 물건별 추가 또는 변경 수수료는 30,000원으로 한다.

4.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물건별로 지정하며, 물건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의 물건별 추가 또는 변경 수수료는 30,000원으로 한다.

4.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

(단위: 원)

구분	수수료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100,000

5.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